

‘법원의 널뛰기 판결’ 갈피 못잡는 광주시의회

보좌관 급여를 착복해 제명 처분됐던 나현 광주시의원이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법원의 두 번째 집행정지 인용으로 의원직을 다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용, 본안소송 패소, 다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광주시의회 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등 행정력이 난비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지난 21일 나현 광주시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오는 10월8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나 의원은 제명의결 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10월8일까지 제한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회복하

나 의원 재판 ‘오락가락’...집행 정지 기각·인용·1심패소·인용

광주시의회 행정력난비에 당혹...재판부 “손해 예방위해 집행정지”

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광주시의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반대 판결이 이어지면서 의회 행정력 난비도 이어지고 있다.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광주시의회에서 제명 처분된 나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은 네 번에 걸쳐 극과 극을 오가고 있다.

본안소송 1심에 앞서 나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광주지법은 기각한 반면 광주고법은 일부 인용해 나 의원이 제명된 지 83일 만에 지난 3월 복직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로 시한부다.

나 의원이 제명된 후 더불어민 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던 최미정 의원은 지난 3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7월23일 본안소송 1심에서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나 의원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제명의결 처분이 정당하다며 나 의원의 청구를 기각

했다.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한 나 의원은 지난 23일 이후 의원직을 다시 잃게됐으나 이를 앞선 21일 집행정지 신청 재인용으로 다시 10월8일까지 의원직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4일부터 최미정 의원의 의회 출석을 대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해 온 광주시의회는 관련 업무를 모두 중단했다.

의회에서는 집행정지 기간이 10월8일인 것을 두고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법원이 통상적으로 본안소송 판결 후로 집행정지 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달리 이번은 별다른 절차와 관련 없이 ‘10월8일’로 못박았

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나 의원이 본안소송 항소를 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행정지를 연장할 필요가 있었다”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데 한 달 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10월8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0월 시정질의, 11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이 예정돼 있으나 법원 판결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 의원이 본안소송 항소심 선고 전인 10월8일 이후 의원직을 잃고, 최미정 의원이 승계받지만 최 의원이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의원이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다시 최 의원이 의원직 박탈당하고 나 의원이 복직하게 돼 이래저래 의회 행정력 난비가 불가피하다.

네 번에 걸친 법적 판단에서 공통된 쟁점은 나 의원 개인의 재산상·신분상 손해와 공공의 복리증여는 것이 크나이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향후 추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나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 모두 타격을 입은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동경비 880만원을 보좌관 A씨가 대납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서선욱 기자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24일 광주 남구 봉선동 한유치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광주 유치원·어린이집이 휴원했다.

광주시, 유흥시설·광화문집회 의무검사 기간 연장

의무 검사 26일까지 연장

광주시가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와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참석자의 코로나19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

광주시는 24일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오는 26

일까지 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7~13일), 경북공역 인근 집회(8일), 광화문 집회(15일) 참석자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의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명성을 보장하며 검사 비용도 면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현재까지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27명이다. 관련자는 3473명이고 이 중 음성이 3955명, 391명은 검사 중이다.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와 감염연관성이 확인된 광주 지역 확진자는 가족간 전파사례를 포함해 총 9명이다.

최이슬 기자

광화문 집회 참가 뒤 진단검사 안 받은 광주시민 91명

222명 중 123명 음성... ‘가족 간 전파까지’ 9명 확진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모여 8·15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광주시민이 91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역당국은 이들에게 조속한 진단검사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과 공조해 소재 파악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화문

도시 집회 참석자는 22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 방역당국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참가자 명단(111명)을 확보한 데 이어,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집회 당시 광화문 일대를 오간 인원 중 광주 거주자가 175명임을 확인했다.

이 중 자진 신고자·명단 중복 기재 등을 제외하면 222명이 검

사대상이다.

이 가운데 131명이 검사를 받아 8명은 양성, 118명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91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집회 참가자에 의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검사 권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경찰과 함께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는 대로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시 방역당국은 이날 경북공역·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다.

이에 따라 경북공역 인근 집회(8월8일), 광화문 집회(8월15일) 방문한 시민들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찾아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와 감염연관성이 확인된 광주 지역 확진자는 가족간 전파사례를 포함해 총 9명이다.

기동취재본부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